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1. 26. 공포, 2024. 12. 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tarbury1@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